

"이사가 부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.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?"

- 위법행위 유지청구

안녕하세요.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

최근 주주들 사이의 분쟁, 회사와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, 이번에는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 중 하나인 위법행위유지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위법행위 유지청구란 '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'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회사의 완전한 손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
A 는 B 회사의 투자자로서 2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A 는 B 회사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작년에 비해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B 회사의 직원을 통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B 회사가 좀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, A 는 B 회사의 주주인 C 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에게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낮은 valuation으로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대로 회사의 이사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들을 배제하고 제 3 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식을 발행한다면, A 는 자신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C 가 자신의 가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.

하지만 자신은 B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지분도 2%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 또는 C 이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.

위와 같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법행위 유지청구입니다.

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 외에서 행사할 경우 이사가 위법행위를 중지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, 그 이사를 피고로 하여 회사를 위하여 위법행위 유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실무적으로는 위법행위유지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,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가 되기 때문에, 해당 이사가 소송 진행 중에 위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.

위법행위유지의 소송은 이사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효력이 한정되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종국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됩니다. 따라서, 경영권 분쟁 과정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사 해임의 소송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. 이는 회사의 상황 및 지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.

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정호석 변호사

Partner

hoseok.jung@seumlaw.com

T. 02.562.3133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© 2017 SEUM Law.